



게임물관리위원회

수신자 민원인
(경유)

제 목 정보공개청구(신청번호: 9937064) 회신의 건

1. 관련근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 제3호, 제11조, 제13조
2.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.

가. 접수번호: 9937064

나. 접수일: 2022. 10. 07.

다. 청구내용: 모바일 게임 '블루아카이브' 관련 회의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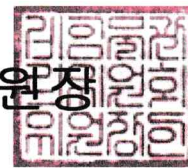
라. 회신내용

- (1)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게임산업법)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(2) '블루 아카이브'는 민원을 통해 인지하여 모니터링 진행한 게임물로, 모니터링 결과 캐릭터의 의상/노출 묘사 정도, 성행위 암시,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 종합하여 검토해보았을 때 등급분류규정 제8조(선정성 기준)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- (3) '블루 아카이브'는 2022년 10월 27일 위원회에서 직권등급재분류 결정되었고,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사업자가 위원회를 통해 '블루 아카이브'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(4) '블루 아카이브'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회의록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회의록을 첨부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(5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참석위원의 성명과 청구정보 외 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 제명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(6)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게임물 목록을 제공 받은 다음 무작위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위원회에서 폭력성, 선정성, 약물 등 내용정보를 중심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. 선정된 게임물은 관련 기기(스마트폰, 태블릿, 컴퓨터, 콘솔 기기 등)를 활용하여 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민원, 언론 등을 통해 이슈가 된 게임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(7)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, 본 문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(8)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직권재분류팀 이경원(051-720-4272)로 연

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



전결 11/03

선임 이경원 팀장 박동범

협조자

일감

시행 직권재분류팀-3435 (2022.11.3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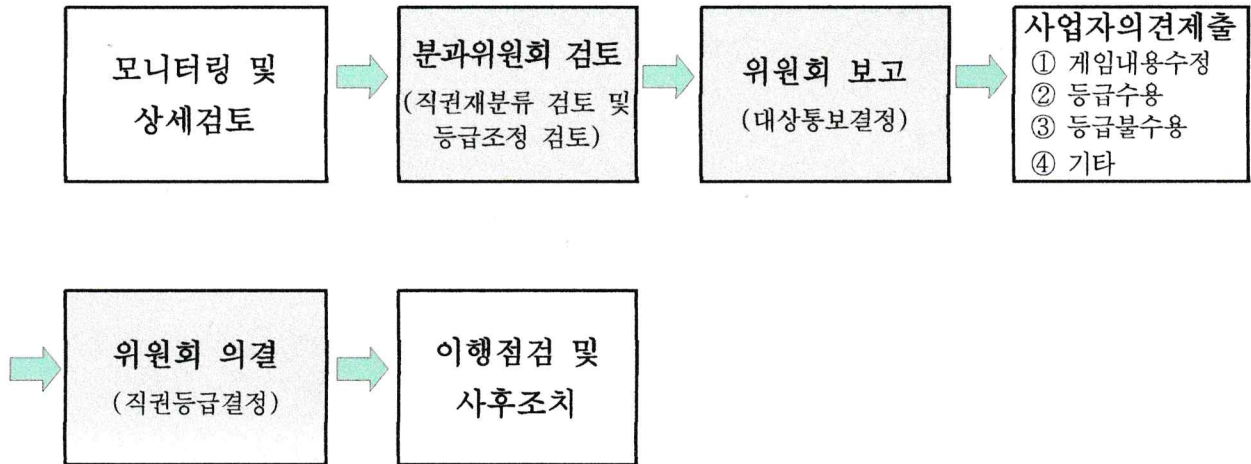
접수

우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(우동, 영상산업센터) 2층 / <https://www.grac.or.kr>

전화 전송 / iknow@grac.or.kr /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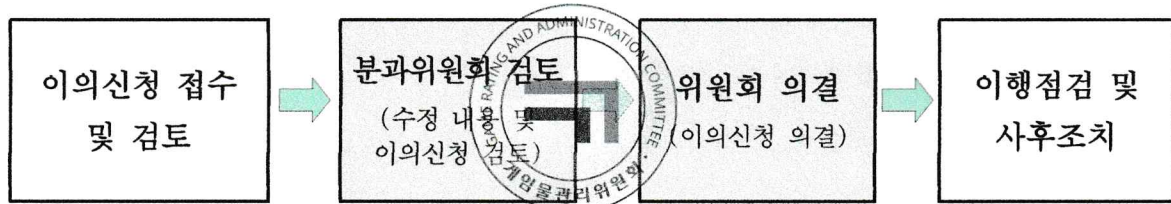
함께 누리는 게임문화, 건강한 게임생태계 실현

< 직권등급재분류 절차 >



※ 사후조치 이후 이의신청의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

< 이의신청 절차 >



직권등급재분류 및 이의신청 절차

1. 보고사항

- 2022년 제14차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

2. 주요내용

- 개최일자: '22. 9. 1.(목), 14:00 ~ 15:00
- 참석위원: [REDACTED]
- 검토대상
 - 직권등급재분류 및 등급조정 대상: [REDACTED] 등 117종 게임물
 - 등급 부적정 시정요청 [REDACTED] 등 606종 게임물
- 결정내용(세부내용 첨부 참조)
 - 1)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결정: 총 116건
 - 직권등급재분류 결정: 91건
 - 등급조정 결정: 17건
 - 등급거부 결정: 8건
 - 2)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연기: 총 1건
 - 3) 등급 부적정 시정요청 결정: 총 606건

3. 향후계획

-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별 대 [REDACTED] 및 의견 회신 내용 검토 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위한 [REDACTED]

4. 참고사항

- 관련 법률
 -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 제16조(게임물관리위원회) 제6항
 -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 제21조의8(직권등급재분류 등)
 - '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 제21조의9(등급조정조치 등)

※ 첨부: 직권등급재분류 및 등급조정/ 등급 부적정 시정요청 목록 1부.

연번	게임명	사업자	자체등급 등급	결정등급	부적정 사유	비고
42	블루 아카이브	GOOGLE	15세이용가	청소년이용불가	신청성	
43	블루 아카이브	APPLE	12+	청소년이용불가	신청성	
44	블루 아카이브	윈스토어	15세이용가	청소년이용불가	신청성	

[사후관리에 관한 사항]

보고안건, 제1호: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15건

보고안건, 제2호: 2022년 제14차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723건

(제32차 위원회 회의안건 참고)

(위원) 연구원 보고청취 후 의결안건을 접수함

결과: 접수

제32차 게임물관리위원회(사후관리) 안건 및 회의록

